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45285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김현준

피 고 1.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종훈, 장예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8. 12. 20. 인터넷 웹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2020. 7. 23.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고, 2020. 8. 20. 재차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D은 2020. 4. 13.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20. 7. 31. 이를 사임하였고, 2020. 8.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비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소스코드 및 운영 중인 콘텐츠 등 거래소운영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제공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하며 도의적인 상거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리)

제1조의 "서비스"는 이하와 같다.

- 1. 거래소 플랫폼 관련된 소스코드
- 2. 거래소 관련된 모든 UI 및 기능과 이미지
- 3. CMS 페이지
- 4. 문자, 이메일 발송 서비스
- 5. 서버 셋팅 (웹서버, 코인서버, 몽고DB, Redis 등)
- 6. 매수매도 체결 엔진
- 7. 코인자동입금 엔진1)
- 9. 호스팅계약의 이전
- 10. 거래소 운영 정책 및 이용 규정 수립 대행 서비스

## 제3조(서비스 정산 방법)

"갑" 및 "을" 사이의 서비스공급에 대한 대금의 지급방법은 이하와 같다.

- 1. 서비스공급대금총액 : 일금 일천일백만 원정 (₩11,000,000)(vat 포함)
- 2. 대금의 지불시기

일금 일천일백만 원정 (₩11,000,000)(vat 포함)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의 지정 통장으로 입금한다.

#### 제4조(서비스의 이용)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제2조의 서비스 목록에 기술된 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갑) 주소: 서울 강남구 F, 9층

회사명: A㈜

대표자: D

(을) 주소: 부산 금정구 G, 3층



회사명: ㈜C

대표자: H

마.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원고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스코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624), 위법원은 2021. 3. 22. 위 소스코드가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워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러한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운영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축하면서 개발한 소스코드 및 솔루션, 컨텐츠 등은

<sup>1)</sup>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 제2조에는 8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으로 얻은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피고 회사에 헐값에 넘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축함에 있어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T라는 명칭의 암호화폐(이하 '이 사건 암호화폐'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 D은 J및 K, L, M, N, O, P, Q, R, S의 9명(이하 'O 외 8인'이라 한다)에게 이사건 암호화폐를 임의배정한 후 이를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있던 자금이 이 사건 암호화폐의 매각대금이라는 명목으로 J및 O 외 8인의 각 계좌로무단 인출되었고(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J의 경우 2,611,003,500원이고, O 외 8인의 경우 3,130,000,000원이다), 피고 D은 이와 같이 인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회사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러한 피고 D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741,003,500원(= 2,611,003,500원 + 3,130,000,000원)을 배상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가.항 내지 라.항의 각 청구 중 일부로서 피고들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D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2022. 11. 10.자 준비서면 3, 4쪽 참조).



## 3. 판단

# 가.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참조).

### 2) 판단

#### 가) 상호권의 침해 여부



-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는 원고의 상호인 'A 주식회사'에 'T'만을 추가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기업의 상호에서 'T'은 사업영역 확대 및해외진출 등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동종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상호권자의 이익과 함께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호 제도의 취지상 오인가능성에 관한 판단주체인 수요자의 범위에는 일반투자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암호화폐의 일반투자자로서는 실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가진 원고와 피고 회사를 혼동하여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고 볼 수있다.
-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상법 제23조 제4항), 원고가 본점을 '서울 강남구 F, 9층'으로 두고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2020. 7. 23. 상호를 '주식회사 C'(이 사건 상호)로 변경하고 2020. 7. 29. '부산 금정구 G, 3층'에서 '서울 강남구 U'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가 동종영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무렵 피고 회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한 것은 당시 원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되어 있



는 이용자들을 피고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글로벌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합의하여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상호를 잘 아는 상태에서 앞서 본 오인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 사건 상호로의 변경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와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 나) 손해의 발생 여부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제2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정리를 명받았음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② 일반투자자가 피고 회사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로 오인하고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한 기간은 2020. 7. 23.부터 2020. 8. 20.까지인데, 이와 같이 불과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호권 침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 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 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 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 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 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 ·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 된다. 그러나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 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 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 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 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대법원 2003.



#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 2) 판단

- 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는, 상단 메뉴바 및 메인페이지의 하단 구조, 공지 팝업창, 로그인 화면, 운영정책·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마케 팅 활용 수신, 제휴/제안문의, FAQ(자주 묻는 질문)가 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참조).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편집저작자의 독자적 개성, 즉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이 사건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는 메뉴바(갑 제3호증의 1)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 가로로 항목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고, 좌측에 거래소 명칭이나 이를 나타내는 기호를 삽입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행하여지 는 편집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 사건 홈페이지 상 메인페이지의 하단(갑 제3호증의 2)은 먼저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사업자번호를 표시하였고, 이어서 '회사', '고객지원', '고객센터'로 항목을 나누어 이용자로 하여금 위 각 항목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휴/제안문의', '공지사항', 'FAQ'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③ 공지 팝업창, 로그인 화면, 운영정책·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마케팅 활용 수신, 제휴/제안문의, FAQ(갑 제3호증의 3 내지 7)의 각 구성 역시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내용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안내사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 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보유



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의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주관적으로 사업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1. 거래소 플랫폼 관련된 소스코드, 2. 거래소 관련된 모든 UI 및 기능과 이미지, 3. CMS 페이지, 4. 문자, 이메일 발송 서비스, 5. 서버 셋팅(웹서버, 코인서버, 몽고DB, Redis 등), 6. 매수매도 체결 엔진, 7. 코인자동입금 엔진, 8. 호스팅계약의 이전, 9. 거래소 운영 정책 및 이용 규정 수립 대행 서비스'(이하 '이 사건 각서비스'이라 한다)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 11. 10.자 준비서면 4, 5쪽 참조).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서비스가 영업비밀로서 특정이되었다거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정보가 어떠한 이유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제2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정리를 명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서비스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다거나 이 사건 각 서비스가 원고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화면이나 운영정책(갑 제6호증의 1, 2)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자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인다.

# 라. 무단 자금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1)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2.의 라.항과 같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암호화폐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암호화폐를 발행한 J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암호화폐를 거래한 이용자들의 소유이다. J 및 O 외 8인이 원고의 이 사건 거래소에 예치한이 사건 암호화폐를 매도하였고 그 대가로 취득한 원화의 출금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계좌에서 J 및 O 외 8인의 각 계좌로 자금이 인출된 것이다. 이와 같이 J 및 O 외 8인이 원화 출금 채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 이용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원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이 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2) 판단



가)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20. 5. 6.부터 2020. 7. 23.까지원고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합계 2,643,003,500원이 이체되었고 2020. 5. 12.부터 2020. 6. 15.까지 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그차액은 2,611,003,500원(= 2,643,003,500원 - 32,000,000원)인 사실, ② 2020. 7. 30. 원고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498,023,678원, 2020. 7. 29. 원고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199,937,317원, 2020. 7. 31. 원고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228,570,000원, 2020. 7. 30. 원고의 계좌에서 O의 계좌로 395,289,331원, 2020. 7. 30. 원고의 계좌에서 P의 계좌로 496,111,954원, 2020. 7. 30. 원고의 계좌에서 Q의 계좌로 517,196,331원, 2020. 7. 29. 과 2020. 7. 30. 원고의 계좌에서 R의 계좌로 198,981,456원, 2020. 7. 30. 원고의 계좌에서 S의 계좌로 301,933,514원이 각 이체되었고 위와 같이 각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2,836,043,581원2)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15,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17, 19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J 및 O 외 8인의 각 계좌로 자금이 인출된 것이 피고 D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sup>2) = 498,023,678</sup>원 + 199,937,317원 + 228,570,000원 + 395,289,331원 + 496,111,954원 + 517,196,331원 + 198,981,456원 + 301,933,514원



- ① 피고 D은 2020. 5.경 당시 원고의 직원이던 V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 1,000억 개를 발행하였고, 해당 암호화폐가 원고의 전자지갑에 송금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에 상장된 이 사건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개할목적에서 그 실물을 임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전자지갑에 이를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해당 암호화폐의 발행자를 확인할 만한 이 사건 거래소의 장부 등 자료가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피고 D과 J은 이 사건 암호화폐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J이 이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19호증 녹취록의 9 내지 12쪽, 갑 제20호증 녹취록의 17, 22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암호화폐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②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암호화폐를 발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자금이 무단으로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소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상장한 이후에 위 거래소 이용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소유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D 등은 2020. 5. 4. 원고의 이 사건 거래소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상장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1구좌 6,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이 사건 거래소에 신규 암호화폐가 상장될 때마다 100,000개의 이 사건 암호화폐를 지급해준다는 이른바 'W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홍보하면서, 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직급수당 등을 이 사건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피고 D 등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암호화폐의 구입대금이자 W서비스의 가입비용으로 입금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의 매각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20. 5. 12.부터 2020. 6. 15.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을 입금한 점, ① 원고의 계좌로부터 위와같이 자금을 이체받기 전이나 그 무렵 K는 7,000,000원을, M은 30,000,000원을, N은 59,560,000원을, O는 30,000,000원을, P은 264,000,000원을, Q는 180,000,000원을, R은 26,000,000원을, S은 126,000,000원을 각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30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에서 J 및 O 외 8인의 각 계좌로 자금이 인출된 것은 J 및 O 외 8인이 이 사건 암호화폐의 상위 투자자들로서 구입하거나 W서비스와 각종 수당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암호화폐를 이 사건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을 출금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자금이 무단으로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J 및 O 외 8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암호화폐 및 원화의 각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소의 데이 터베이스 등 해당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 D과 J이 공모하여 아무런 거래관계상의 증빙 없이 원고의 계 좌에서 J의 계좌로 앞서 본 차액 2,611,003,5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sup>3)</sup>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23. 6. 14.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825)에는 "① R은 2020. 6. 24.부터 2020. 7. 24.까지 7회에 걸쳐 270,000,000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로부터 2020. 6. 24.부터 2020. 7. 30.까지 합계 967,914,533원을 송금 받았다. ② P은 2020. 6. 15.부터 2020. 7. 8.까지 6회에 걸쳐 264,000,000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로부터 2020. 6. 22.부터 2020. 7. 30.까지 합계 687,398,244원을 송금 받았다. ③ O는 2020. 6. 9.부터 2020. 7. 24.까지 10회에 걸쳐 84,000,000원을 원고에 입금하였고, 원고로부터 2020. 6. 18.부터 2020. 7. 30.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848,725,619원을 송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판결문 8쪽 참조).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피고 D 및 J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0. 12. 23. J이 이 사건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 간 매도매수로 투자수익에 대한 차액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위 혐의를 판단하기위해서는 원고의 메인서버를 정상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암호화폐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메인서버 유지비를 납부하지 못해 메인서버 활성화가 어려워 그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 D과 J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김수현

판사 최항선